

준수사항 (천안어린이꿈누리터)

1. 사용자는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대관 신청일 최소 3주 전에 대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
3.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천안어린이꿈누리터로부터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예약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공연장 외의 시설(지하1층 흥놀이터, 1층 야외놀이터·책누리방·쉼터 등) 사용이 불가함을 사전에 대관 방문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수 없으며, 분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6. 사용자가 홍보물을 공연장 내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관람객이 음식물을 공연장 안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8. 사전협의되지 않은 장비, 물품 등의 반입에 대해서는 제한 및 철거시킬 수 있다.
9.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선전, 판매, 예약 등)와 종교단체의 집회·포교,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사용은 불허한다. 이를 위반 시 행사를 중지시키고 대관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10.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정전, 기기 고장)의 사유로 인하여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료를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운영조례 제 22조(사용료의 반환)에 의거 반환하며, 사용자는 사용료 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 요구할 수 없다.
11. 사용자는 천안어린이꿈누리터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 및 안내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공연장 출입문 내·외에 최소 각 1명씩을 배치하여 공연 또는 행사 중에 관람객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린이의 입장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를 통제할 충분한 안전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요원이 질서유지를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12. 대관 허가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중복될 시에는 사용자는 사용 일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3. 천안어린이꿈누리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극, 영화, 행사 등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냉방 또는 난방을 하여야 한다. (추가된 냉·난방 및 부대시설 사용 요금은 대관이 끝난 후 정산한다.)
14. 무선마이크 배터리 및 기타 소모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사용자는 행사가 끝난 후 사용한 시설물 및 집기류를 원상태로 반환·복구하여야 하며, 사용한 공연장 내·외부를 청소 완료한 후 관리자와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분리수거 쓰레기봉투 준비)
16. 천안어린이꿈누리터는 사용자가 상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통보하며,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천안어린이꿈누리터는 차후 사용자에게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7. 공연장 객석 계단 통로에 앉거나 서있지 않으며, 의자 등 거치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